

# 경운대학교 학생권익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인 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는 통합적 옴부즈만(Ombudsman) 역할의 수행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학생권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생 갈등”이라 함은 학생들에게 대학 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 대립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일련에 행위(사건 등)를 말한다.
2. “학습권 보장”이라 함은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학 내 제도의 범위 내에서 그 방법과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학생 권익보호”라 함은 학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신고 사항을 청취 및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권한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수행한다.

1. On-Off Line VOS(Voice Of Students) 운영
2. 학생 갈등, 학습권 보장 및 학생 권익보호에 반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조사
3.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4. 지원부서 담당자에 대한 비밀 유지, 보고 및 지도
5. 제도 개선 및 개정에 대한 권고

② 위원회는 각 소관 부서(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조율·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서(기관, 단체 등)에 관련 내용(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결의할 수 있다.

③ 대학 내 각 소관 부서(기관, 단체 등)은 위원회의 요구, 지도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장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불이익 조치를 강구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잠재적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신고인 또는, 조사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접수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처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대학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전문위원 및 학생대표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및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2인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2. 법학·행정학 전공 대학교수
3. 10년 이상의 관련 업무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내·외부 인사

**제7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부총장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그 기간을 따로 정한다.

## 제3장 운영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총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안 접수)** ① On-Off Line VOS(Voice Of Students)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접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접수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2. 사안의 접수를 익명 또는, 특정되지 않은 주소나 불분명한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3.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4. 종결된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반복 접수의 경우
5. 기타 학생의 권익과 관련이 없는 사안

② 위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장 보칙

**제11조(수당 등 경비)**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의 외부 전문위원에게는 수당, 출장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2020.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구성·운영 중인 학생권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